

| 노사정대표자회의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관련 합의 도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회적 합의

송해순 전문위원

합의 추진 경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제2차 및 제3차 대표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첫 의제별 위원회로, 7월 12일 발족했다. 발족 이후, 저임금 일자리 감소 및 영세자영업 등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 문(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제1차 공익위원 워크숍(8.1)을 개최하여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2018년 하반기 중점 논의과제 선정 취지와 원칙)를 작성했다. 공익위원 의견서는 제3차 전체회의(8.3)에 보고하였고, 공익위원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차 공익회의(8.9)와 제1차 확대간사단회의(8.9), 제2차 간사단회의(8.10)를 개최하여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제4차 전체회의(8.10)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지만, 정부에서 내부 보고·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문(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검토 이후 진행된 제3차 간사단회의(8.21)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취지 및 원칙

합의의 취지는 현재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체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므로 즉각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적 과제이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바,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

첫째, 정부가 이미 급여수준 또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계획한 제도, 둘째, 정부가 도입을 계획한 제도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기 도입이 가능한 제도, 셋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편 없이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했다.

합의 내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빈곤대책·노인빈곤대책·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근로빈곤대책에는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도입 예정인 ‘(가칭)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한시적 지급,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제도개선 등을 포함했다.

둘째, 노인빈곤대책으로는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2019년에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20년에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조기에 적용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방침(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2019년 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 2022년 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을 앞당겨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사회서비스 강화 부분에서는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 국공립 요양기관의 대폭 확대를 포함했다. 또한,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의 의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 들어 도출한 첫 번째 사회적 합의이며, 둘째, 지난 1.31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번째 합의이며, 셋째,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후 3년 만의 첫 합의라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에 전체위원들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빠른 정책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 합의라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부담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은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근로빈곤대책

- 1-1.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
- 1-2.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1-3.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1-4.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 노인빈곤대책

- 2-1.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 2-2.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인상시기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3-2.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4 사회서비스 강화

4-1.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4-2.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4-3.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2018. 8. 21.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